

○ 2015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보합세임.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전월과 보합세임.

◆ 201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4% 상승(생활물가지수 0.7% 감소)

○ 201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2(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2%), 음식·숙박(2.4%), 교육(1.7%), 의류·신발(1.5%)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8.8%)과 주택·수도·전기·연료(-1.2%)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7.62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전월대비로는 0.3%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2					2013					2014					2015 ^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월	1/4 ^p	4월 ^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2.6	-1.0	-27(-1.2)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2.8	-1.3	-27(-1.3)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2.2	-0.9	-1.8(-0.4)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4.5	-0.8	-0.7(1.0)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0.6	-0.8	-3.1(-1.9)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1.2	2.8	4.1(0.5)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0.2	1.7	4.9(1.6)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12.1	7.6	2.8(-0.8)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7	0.6	0.5(0.5)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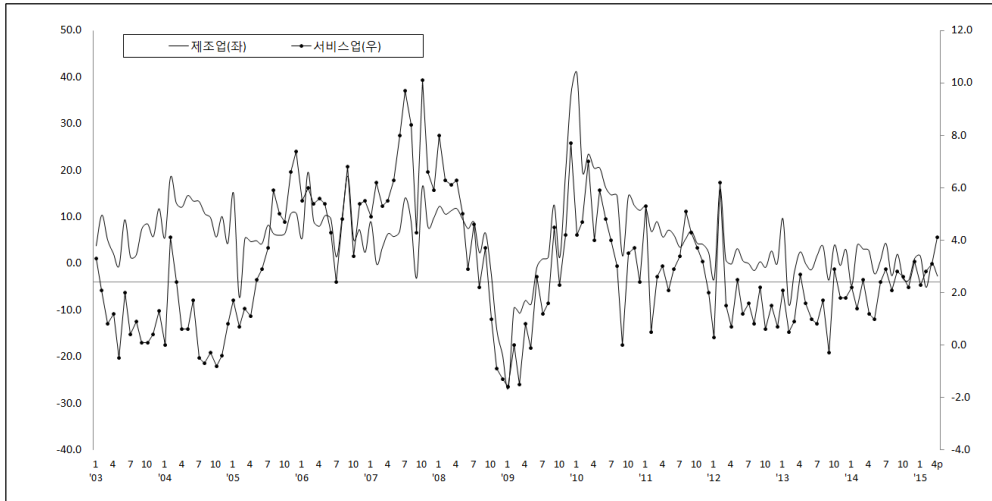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5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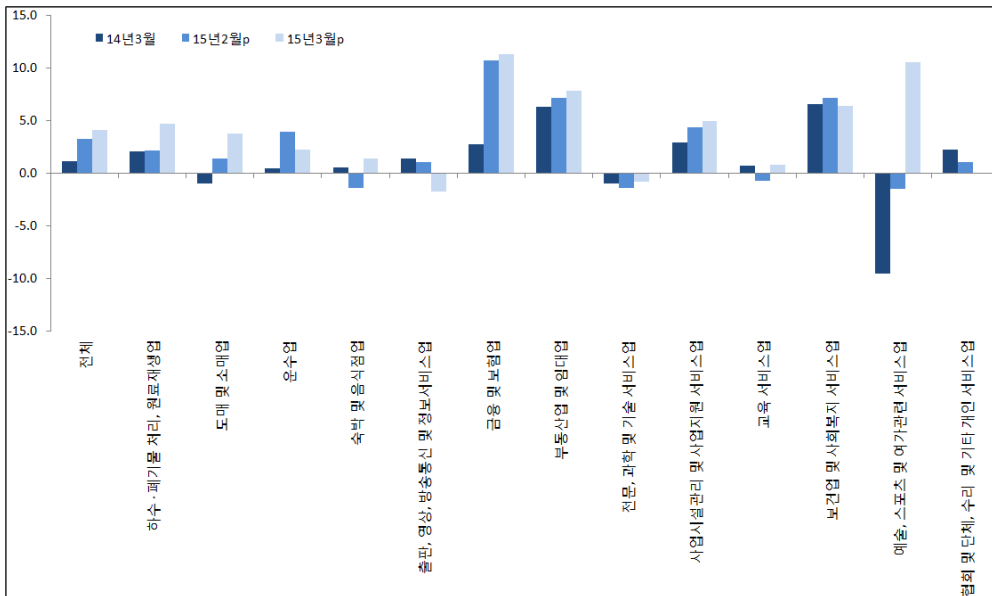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2월, 3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6), 『2015년 4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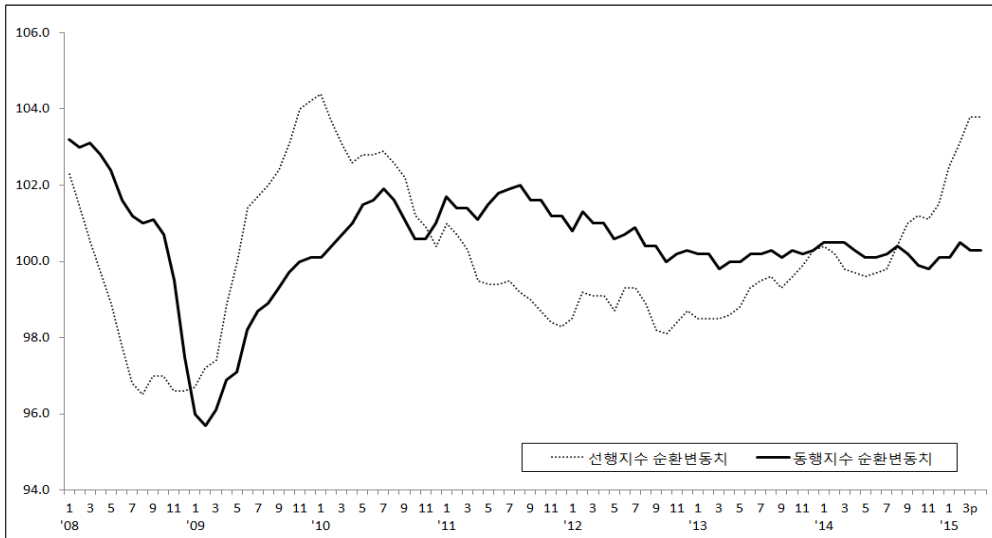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취업자 379천 명 증가로 증가폭 회복**

- 2015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2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9천 명(1.7%) 증가함.
 -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678천 명으로 233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은 11,533천 명으로 216천 명(1.9%) 증가하였음.
- 2015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 성별로 보면, 남성(74.5%)과 여성(52.6%)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1%p,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5년 5월 중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과 동일, 여성의 고용률은 50.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5월 중 취업자는 26,1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9천 명(1.5%)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5,0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1,0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6천 명(1.8%)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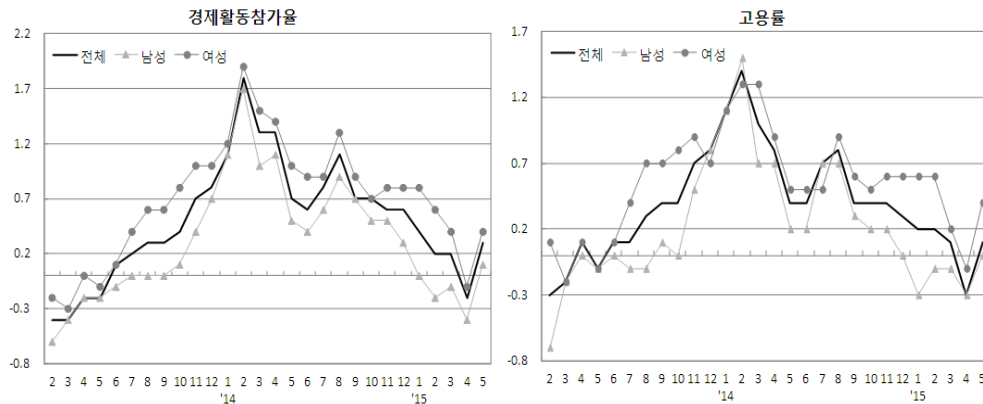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2/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6,078 (2.2)	25,945 (3.4)	26,767 (2.4)	26,762 (2.2)	26,810 (2.4)	26,622 (2.1)	26,356 (1.6)	26,954 (0.9)	27,211 (1.7)
참가율	61.7	61.3	63.1	63.0	63.0	62.4	61.5	62.8	63.3
취업자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11 (1.6)	25,927 (2.0)	25,767 (1.7)	25,267 (1.4)	25,900 (0.8)	26,189 (1.5)
고용률	60.0	58.8	60.8	60.8	60.9	60.4	59.0	60.3	60.9
실업자	733	1,031	977	951	884	854	1,089	1,053	1,022
실업률	2.8	4.0	3.7	3.6	3.3	3.2	4.1	3.9	3.8
비경제활동인구	16,167 (-0.6)	16,397 (-2.6)	15,685 (-1.4)	15,691 (-1.0)	15,760 (-1.4)	16,066 (-0.6)	16,469 (0.4)	15,971 (1.7)	15,764 (0.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6), 『2015년 5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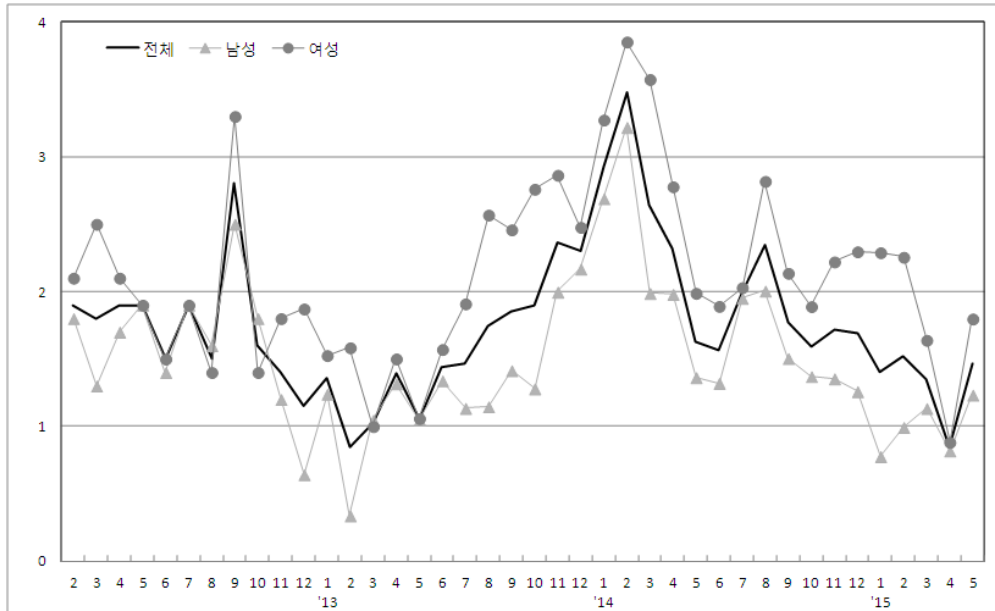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5월 중 실업자는 1,02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7.4%) 증가,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 명(9.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5.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7%, 여성이 3.8%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3%p, 0.1%p 상승하였음.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 명(0.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 명(0.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0.3%)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8천 명(10.6%)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68천 명으로 230천 명(-5.4%) 감소하였음.

◆ **농림어업 제외 전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40천 명, 3.2%), 건설업(41천 명, 2.3%),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78천 명, 3.1%),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141천 명, 1.5%), 전기·운수·통신·금융업(4천 명, 0.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2천 명, -7.4%)에서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4월	5월
전 산업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11 (1.6)	25,927 (2.0)	25,767 (1.7)	25,267 (1.4)	25,900 (0.8)	26,189 (1.5)	
농림어업	1,504 (-1.0)	1,179 (1.0)	1,631 (-3.2)	1,656 (-3.4)	1,603 (-7.0)	1,395 (-7.2)	1,092 (-7.3)	1,428 (-8.6)	1,534 (-7.4)	
제조업	4,245 (1.2)	4,279 (3.0)	4,319 (3.3)	4,324 (3.6)	4,346 (4.7)	4,374 (3.0)	4,418 (3.2)	4,455 (3.9)	4,464 (3.2)	
건설업	1,783 (-0.5)	1,683 (1.6)	1,813 (0.6)	1,821 (0.8)	1,833 (3.2)	1,854 (4.0)	1,756 (4.3)	1,838 (3.5)	1,862 (2.3)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	5,751 (2.6)	5,837 (5.5)	5,798 (3.8)	5,772 (3.1)	5,930 (4.9)	5,992 (4.2)	5,984 (2.5)	5,887 (1.2)	5,950 (3.1)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994 (3.6)	8,865 (2.4)	9,147 (1.9)	9,160 (1.6)	9,176 (2.1)	9,128 (1.5)	8,978 (1.3)	9,216 (0.7)	9,301 (1.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4 (1.9)	3,055 (1.9)	3,067 (-0.5)	3,062 (-0.4)	3,026 (-2.5)	3,015 (-1.3)	3,029 (-0.9)	3,064 (-0.4)	3,066 (0.1)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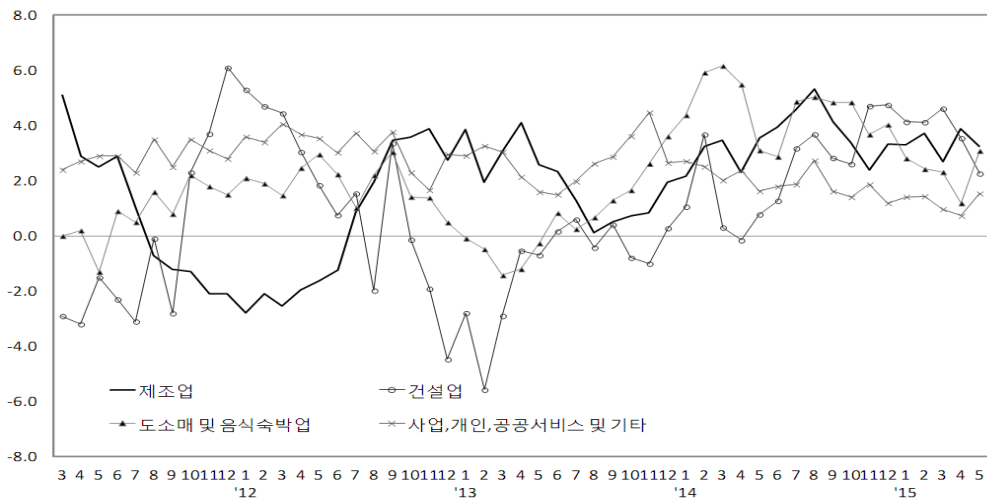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2015. 6), 『2015년 5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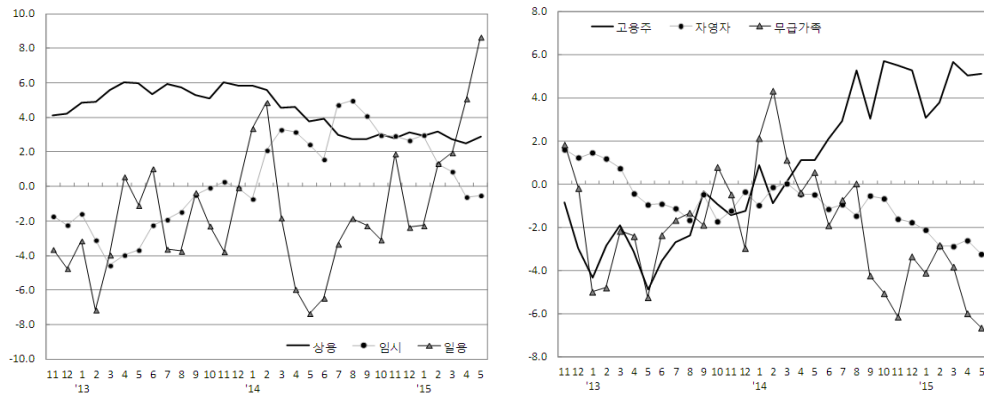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세 지속

- 2015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2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0천 명(2.4%)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9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2천 명(1.2%)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517천 명으로 351천 명(2.9%), 일용근로자는 1,710천 명으로 136천 명(8.6%)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58천 명으로 26천 명(-0.5%) 감소하였음.
 - 상용·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며, 특히 일용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그림 7 좌측 참조)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702천 명으로 4천 명(0.1%)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02천 명으로 86천 명(-6.6%) 감소하였음.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9천 명(7.7%)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259천 명으로 128천 명(0.6%)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5월			4월	5월
전 체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811 (1.6)	25,927 (2.0)	25,767 (1.7)	25,267 (1.4)	25,900 (0.8)	26,189 (1.5)
비임금근로자	6,854 (-0.9)	6,597 (0.3)	6,984 (-0.3)	6,986 (-0.3)	7,047 (0.0)	6,799 (-0.8)	6,509 (-1.3)	6,819 (-1.9)	6,904 (-1.2)
자영업자	5,618 (-0.9)	5,512 (-0.1)	5,712 (-0.2)	5,698 (-0.5)	5,760 (0.3)	5,625 (0.1)	5,463 (-0.9)	5,656 (-1.0)	5,702 (0.1)
무급가족종사자	1,236 (-0.8)	1,085 (2.5)	1,272 (-0.6)	1,288 (0.6)	1,287 (-1.7)	1,175 (-4.9)	1,046 (-3.6)	1,164 (-6.0)	1,202 (-6.6)
임금근로자	18,492 (3.4)	18,316 (4.0)	18,806 (2.6)	18,825 (2.4)	18,880 (2.8)	18,968 (2.6)	18,758 (2.4)	19,081 (1.9)	19,285 (2.4)
상용근로자	11,925 (5.6)	11,985 (5.3)	12,175 (4.1)	12,167 (3.8)	12,181 (2.8)	12,280 (3.0)	12,341 (3.0)	12,448 (2.5)	12,517 (2.9)
임시근로자	4,935 (0.0)	4,835 (1.5)	5,063 (2.4)	5,084 (2.4)	5,153 (4.6)	5,076 (2.9)	4,918 (1.7)	5,016 (-0.6)	5,058 (-0.5)
일용근로자	1,631 (-2.1)	1,496 (2.1)	1,567 (-6.6)	1,574 (-7.4)	1,546 (-2.5)	1,612 (-1.2)	1,500 (0.3)	1,617 (5.1)	1,710 (8.6)
36시간 미만	3,395 (5.5)	3,593 (-35.4)	3,397 (-29.5)	3,383 (-56.6)	5,229 (2.9)	3,659 (7.8)	3,689 (2.7)	3,722 (8.8)	3,642 (7.7)
36시간 이상	21,636 (1.7)	20,829 (15.1)	22,090 (9.3)	22,131 (27.6)	20,184 (1.9)	21,779 (0.7)	21,091 (1.3)	21,883 (-0.3)	22,259 (0.6)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2015. 6), 『2015년 5월 고용동향』.

◆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률 상승

- 2015년 5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30~39세(3.1%, -0.2%p)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4%, 0.2%p), 고졸(4.0%, 0.1%p), 대졸 이상(4.1%, 0.3%p)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2015년 5월 중 전체 실업자 1,02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9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24천 명으로 24천 명 증가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4월	5월
전 체	733 (2.8)	1,031 (4.0)	977 (3.7)	951 (3.6)	844 (3.3)	854 (3.2)	1,089 (4.1)	1,053 (3.9)	1,022 (3.8)	
15~29세	328 (7.9)	419 (9.8)	399 (9.4)	366 (8.7)	371 (8.6)	350 (8.3)	445 (10.3)	445 (10.2)	406 (9.3)	
30~39세	155 (2.6)	187 (3.2)	202 (3.4)	194 (3.3)	181 (3.0)	164 (2.8)	184 (3.1)	209 (3.6)	184 (3.1)	
40~49세	114 (1.7)	155 (2.3)	167 (2.4)	177 (2.6)	145 (2.1)	146 (2.1)	164 (2.4)	163 (2.4)	185 (2.7)	
50~59세	88 (1.5)	130 (2.2)	140 (2.3)	147 (2.4)	129 (2.1)	136 (2.2)	157 (2.6)	152 (2.5)	160 (2.6)	
60세 이상	48 (1.4)	140 (4.4)	69 (1.9)	68 (1.8)	58 (1.5)	58 (1.6)	139 (4.1)	85 (2.3)	88 (2.2)	
중졸 이하	84 (1.8)	173 (3.9)	108 (2.3)	107 (2.2)	95 (2.0)	96 (2.1)	164 (3.9)	97 (2.1)	112 (2.4)	
고졸	335 (3.3)	443 (4.3)	427 (4.1)	412 (3.9)	414 (3.9)	381 (3.6)	472 (4.5)	438 (4.1)	425 (4.0)	
대졸 이상	313 (2.8)	416 (3.7)	442 (3.8)	433 (3.8)	375 (3.3)	377 (3.3)	453 (3.9)	518 (4.4)	485 (4.1)	
취업무경험실업자	49	83	61	51	56	54	90	106	99	
취업유경험실업자	684	948	916	900	827	800	999	947	924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임.
 자료: 통계청(2015. 6), 『2015년 5월 고용동향』.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5년 3월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

- 2015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4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상승함.
 - 2015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351천 원)은 정액급여 증가율(2.6%)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급여(9.9%)와 특별급여(6.6%)의 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들어서서 2%대로 둔화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84천 원)은 전년동월 대비 0.3% 하락함.
- 2015년 1~3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1% 상승
 - 2015년 1~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56천 원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3.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한 3,540천 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0.5% 하락한 1,409천 원임.
- 2015년 3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 3.6% 상승함.
 - 2015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6% 상승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5.3)	3,111 (3.9)	3,190 (2.5)	3,256 (2.9)	3,054 (1.8)	3,356 (3.1)	3,174 (3.9)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378 (2.4)	3,443 (2.9)	3,237 (2.0)	3,540 (2.8)	3,351 (3.5)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660 (3.2)	2,642 (3.2)	2,651 (3.1)	2,720 (3.0)	2,720 (2.6)
	초과급여	181 (1.0)	184 (1.7)	201 (9.3)	188 (6.8)	200 (8.8)	208 (10.1)	220 (9.9)
	특별급여	527 (5.8)	537 (1.8)	516 (-3.7)	613 (0.4)	386 (-7.8)	613 (0.0)	411 (6.6)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87 (0.7)	1,416 (2.8)	1,388 (2.5)	1,409 (-0.5)	1,384 (-0.3)	
소비자물가지수	106.3 (2.2)	107.8 (1.2)	109.0 (1.3)	109.0 (1.1)	109.0 (1.3)	109.4 (0.6)	109.4 (0.4)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1.8	0.5	2.5	3.6	

주: 1)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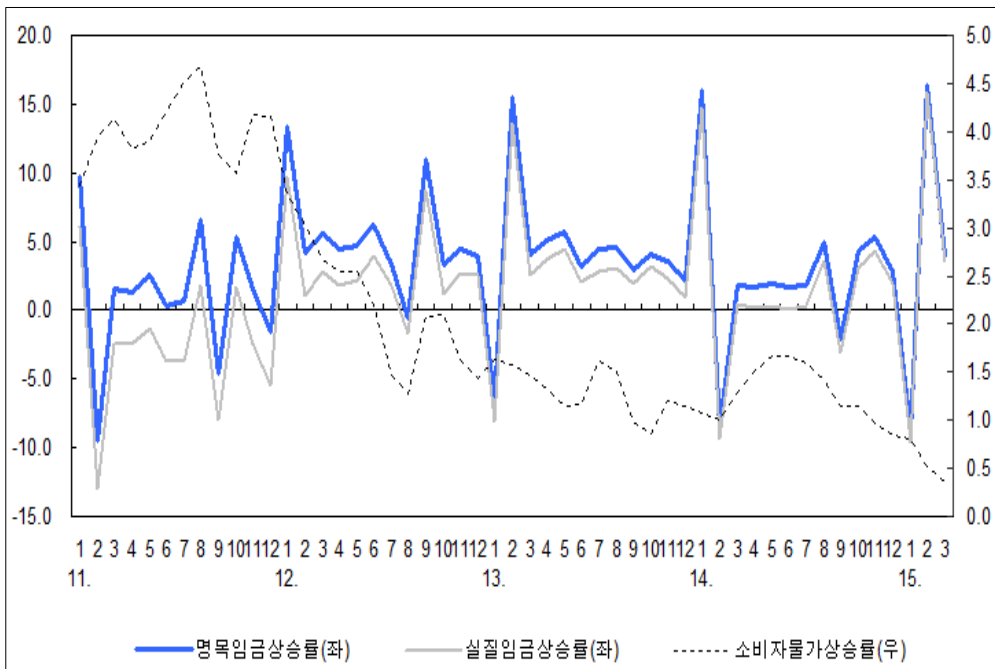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0.9%p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이 상승함.
- 2015년 1~3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2.5% 상승함.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평균 대비 하락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0.2%p 확대된데 기인함.

◆ 2015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 4.4%

- 2015년 4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4%로 2014년 4월 인상률(3.6%)보다 0.8%p 상승함.
 - 2015년 4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19.6%로 전년동월(5.6%)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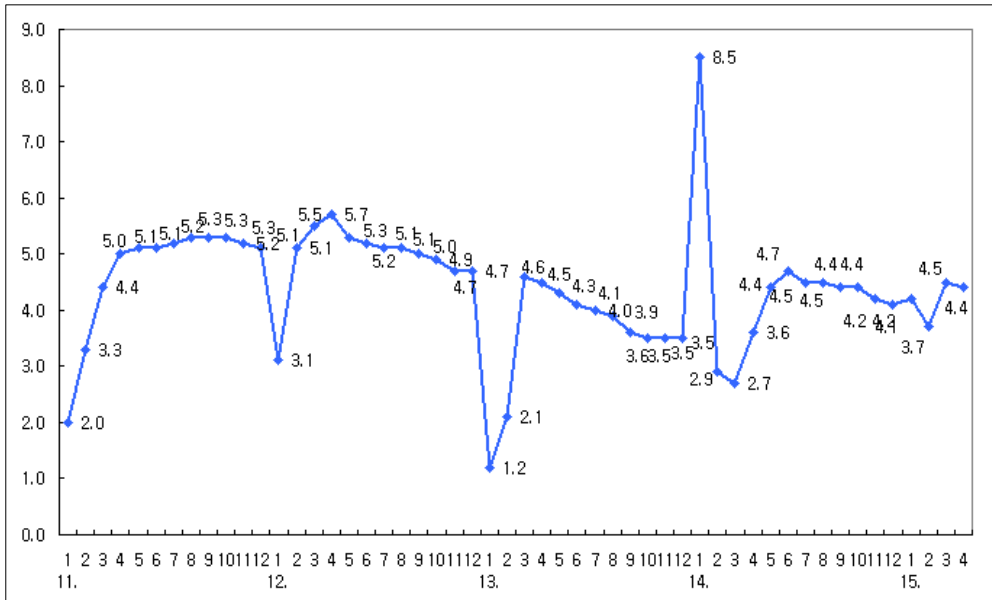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3월 여가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15년 3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큰 산업은 금융및보험업으로 전년동월대비 9.0% 상승한 5,760천 원임.
 - 이외에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3%), 숙박 및 음식점업(6.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2%)은 6%가 넘는 임금상승폭을 기록함.
 - 그러나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함.
- 2015년 1~3월 평균 임금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2015년 1~3월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6.4%), 운수업(6.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6%), 건설업(4.4%) 순으로 임금이 상승함.
 - 특히 전년동평균 대비 임금상승폭이 적었던 산업은 여가 관련 서비스업(0.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3%)이며, 제조업도 전년동평균 대비 2.4% 상승에 그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3월		1~3월	
			평균	3월	평균	3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256 (2.9)	3,054 (1.8)	3,356 (3.1)	3,174 (3.9)
광업	3,557 (2.5)	3,480 (-2.1)	3,488 (-3.4)	3,436 (-0.4)	3,572 (2.4)	3,513 (2.3)
제조업	3,371 (4.7)	3,506 (4.0)	3,683 (5.6)	3,233 (4.0)	3,761 (2.1)	3,388 (4.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586 (5.7)	6,739 (5.2)	5,799 (3.8)	7,166 (6.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793 (3.7)	2,702 (3.4)	2,890 (3.5)	2,813 (4.1)
건설업	2,414 (6.2)	2,497 (3.4)	2,530 (2.1)	2,432 (1.6)	2,642 (4.4)	2,567 (5.5)
도매 및 소매업	3,168 (1.5)	3,206 (1.2)	3,197 (0.4)	3,146 (1.3)	3,299 (3.2)	3,180 (1.1)
운수업	2,732 (5.5)	2,805 (2.7)	2,685 (0.2)	2,592 (1.7)	2,847 (6.1)	2,736 (5.6)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74 (1.7)	1,732 (1.0)	1,828 (3.0)	1,842 (6.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930 (-4.2)	3,873 (-8.2)	4,046 (3.0)	3,957 (2.1)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430 (0.6)	5,284 (3.0)	5,862 (8.0)	5,760 (9.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318 (4.7)	2,280 (5.8)	2,465 (6.4)	2,394 (5.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380 (6.5)	4,277 (5.8)	4,319 (-1.4)	4,317 (0.9)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914 (3.6)	1,889 (2.5)	1,974 (3.1)	1,946 (3.0)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563 (2.5)	3,166 (2.3)	3,705 (4.0)	3,191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36 (-1.5)	2,565 (-1.9)	2,784 (5.6)	2,723 (6.2)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422 (3.3)	2,410 (6.0)	2,431 (0.4)	2,377 (-1.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18 (-1.8)	2,160 (0.3)	2,247 (1.3)	2,175 (0.7)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3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5년 3월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했으며, 중소기업은 전년동월대비 4.1%, 대규모 사업체는 6.2% 상승함.
 - 2015년 3월 기준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9%p 상승한 3,018천 원임. 이는 특별급여 증가율이 컸던 데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한 4,740천 원임. 이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증가율이 컸던 데 기인함.

- 2015년 3월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4% 하락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22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하락함.
 -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1,402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1% 상승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2015	
				1~3월 평균	3월	1~3월 평균	3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299(3.8)	3,378(2.4)	3,443(2.9)	3,237(2.0)	3,540(2.8)	3,351(3.5)
	정액급여	2,578(4.4)	2,660(3.2)	2,642(3.2)	2,651(3.1)	2,720(3.0)	2,720(2.6)
	초과급여	184(1.7)	201(9.3)	188(6.8)	200(8.8)	208(10.1)	220(9.9)
	특별급여	537(1.8)	516(-3.7)	613(0.4)	386(-7.8)	613(0.0)	411(6.6)
	비상용임금총액	1,377(6.5)	1,387(0.7)	1,416(2.8)	1,388(2.5)	1,409(-0.5)	1,384(-0.3)
5~299인	상용임금총액	2,938(3.7)	3,008(2.4)	2,991(2.1)	2,899(1.2)	3,111(4.0)	3,018(4.1)
	정액급여	2,433(4.3)	2,504(2.9)	2,485(3.1)	2,484(2.9)	2,559(3.0)	2,556(2.9)
	초과급여	160(3.0)	172(7.5)	161(6.2)	171(5.4)	174(8.4)	183(7.0)
	특별급여	345(-0.3)	332(-3.6)	346(-6.3)	245(-15.3)	378(9.3)	278(13.7)
	비상용임금총액	1,392(7.0)	1,390(-0.1)	1,418(1.8)	1,400(2.2)	1,407(-0.8)	1,402(0.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583(3.6)	4,827(5.3)	5,089(5.4)	4,465(4.5)	5,323(4.6)	4,740(6.2)
	정액급여	3,093(4.3)	3,272(5.8)	3,213(3.9)	3,259(4.1)	3,388(5.4)	3,401(4.3)
	초과급여	270(-1.6)	316(16.9)	290(8.9)	306(17.4)	346(19.6)	373(22.1)
	특별급여	1,220(3.0)	1,239(1.5)	1,586(7.9)	900(2.3)	1,589(0.2)	965(7.3)
	비상용임금총액	1,219(0.8)	1,354(11.1)	1,400(15.8)	1,279(7.8)	1,437(2.7)	1,223(-4.4)

주: 1)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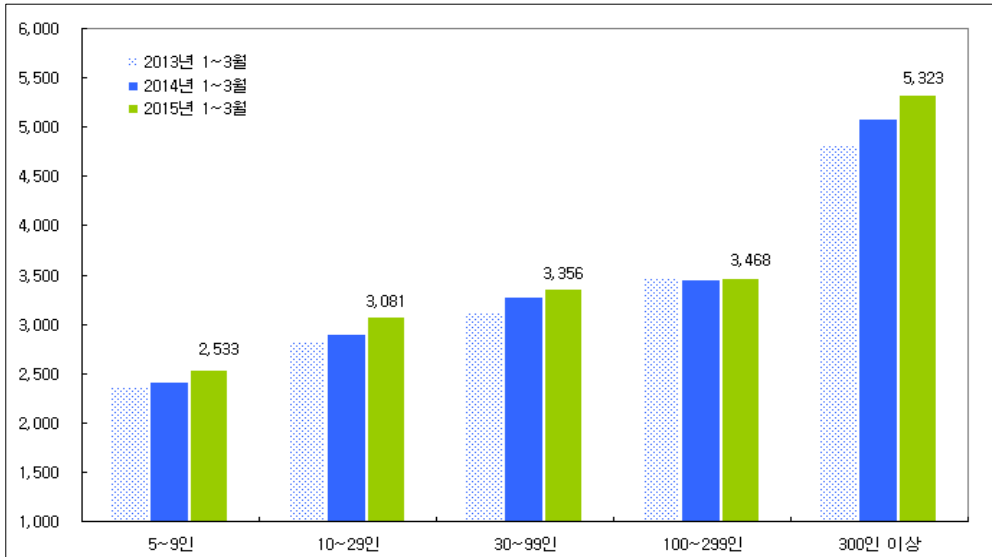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은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했으나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둔화
 -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4.0% 상승한 3,111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4.6% 상승한 5,323천 원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폭은 둔화됨.
 - 중소기업 비상용근로자의 1~3월 평균 임금은 전년동평균 대비 0.8% 하락한 1,4097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 상승한 1,437천 원임.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1~3월 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3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20.8일→21.5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 2015년 3월 근로시간(180.7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함.
 - － 2015년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80.7시간)은 전년동월(174.5시간)에 비해 6.2시간 증가함(표 9 참조).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3월 평균	3월		
전체근로시간	172.6(-1.0)	171.4(-0.7)	170.1(-0.4)	174.5(2.9)	167.9(-1.3)	180.7(3.6)
상용총근로시간	178.1(-1.0)	177.1(-0.6)	175.2(0.1)	180.9(3.5)	172.9(-1.3)	187.3(3.5)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6(-1.0)	164.1(-0.9)	162.6(-0.4)	167.8(3.4)	160.3(-1.4)	174.0(3.7)
상용초과근로시간	12.5(-2.3)	12.9(3.2)	12.5(5.0)	13.0(4.0)	12.6(0.8)	13.2(1.5)
비상용근로시간	122.5(0.2)	117(-4.5)	120.5(-5.2)	116.1(-3.0)	115.0(-4.6)	114.9(-1.0)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1~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187.3시간)과 소정 실근로시간(174.0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3.5%, 3.7% 증가한 반면 비사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한 114.9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3% 감소함.

– 2015년 1~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3% 감소한 167.9시간임(표 9 참조).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감소한 데 기인함(20.3일 → 20.2일)

– 상용근로자의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3% 감소한 172.9시간, 비사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 대비 4.6% 감소한 115.0시간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3월 평균	3월		
전 산업	172.6(-1.0)	171.4(-0.7)	170.1(-0.4)	174.5(2.9)	167.9(-1.3)	180.7(3.6)
광업	180.6(-2.5)	179.4(-0.7)	176.0(-1.6)	184.8(4.3)	173.6(-1.4)	184.5(-0.2)
제조업	185.0(-0.8)	185.4(0.2)	184.2(1.3)	190.8(5.0)	181.2(-1.6)	195.7(2.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1.2)	170.5(-1.7)	169.3(-1.5)	169.2(1.0)	167.0(-1.4)	169.3(0.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1.5)	177.8(-2.3)	176.9(-1.1)	180.7(1.2)	171.0(-3.3)	183.8(1.7)
건설업	152.7(0.1)	148.5(-2.8)	149.4(-4.2)	149.8(-1.0)	144.3(-3.4)	154.2(2.9)
도매 및 소매업	173.4(-0.6)	172.3(-0.6)	170.3(-0.7)	175.6(2.8)	168.2(-1.2)	181.9(3.6)
운수업	177.8(-2.1)	173.1(-2.6)	171.4(-2.1)	175.7(-0.6)	169.8(-0.9)	179.9(2.4)
숙박 및 음식점업	177.3(-5.0)	175.2(-1.2)	174.5(0.9)	174.6(1.9)	172.3(-1.3)	182.2(4.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0.5)	161.9(-0.7)	161.5(0.7)	166.0(4.7)	159.3(-1.4)	174.0(4.8)
금융 및 보험업	162.7(-0.4)	163.4(0.4)	163.1(1.1)	168.0(6.0)	160.1(-1.8)	174.6(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1.0)	190.1(-0.7)	188.5(-0.7)	192.1(1.1)	187.8(-0.4)	200.9(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0.8)	163.3(-0.4)	161.9(0.8)	167.6(4.5)	159.3(-1.6)	174.2(3.9)
사업서비스업	172.3(-0.5)	171.9(-0.2)	169.8(0.2)	174.9(4.0)	168.4(-0.8)	179.0(2.3)
교육서비스업	150.6(-0.3)	152(0.9)	153.2(2.7)	156.6(9.7)	148.2(-3.3)	161.1(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1.6)	169.6(-1.4)	166.9(-1.7)	171.3(1.3)	165.9(-0.6)	179.0(4.5)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0.1)	158.9(0.6)	156.5(1.7)	158.4(1.7)	154.3(-1.4)	165.4(4.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0.8)	162.9(-2.7)	162.1(-2.1)	164.7(0.3)	158.2(-2.4)	169.4(2.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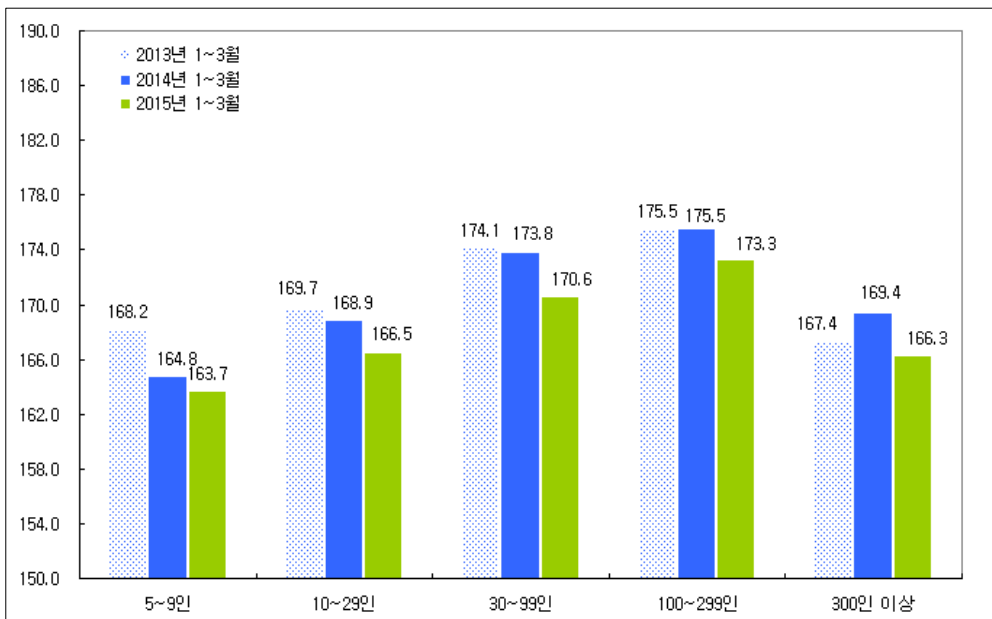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3월 광업(-0.2%)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특히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4.8%)은 전년동월 대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174.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4.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5%)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 대비 감소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3.4% 감소한 144.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3.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3%)으로 나타남.
 - 2015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187.8시간을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제조업(181.2시간)으로 나타남.
- 2015년 3월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181.5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한 17.4시간을 기록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한 176.6시간,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3.9% 증가한 179.0시간,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3.0% 증가한 186.0시간,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2.4% 증가한 185.0시간을 기록함.
- 2015년 1~3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평균 근로일수가 줄어들어 따라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1.2% 감소한 168.2시간,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평균 대비 1.8% 감소한 166.3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가계수지 동향

◆ 2015년 1/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5년 1/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3.8%), 이전소득(10.4%), 재산소득(17.9%)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함(실질로는 2.0%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2.8%)은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임금근로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됨.
 - 소비지출은 월세지출 및 외식, 의약품 등의 소비증가로 주거·수도·광열(3.8%), 음식·숙박(3.8%) 보건(4.0%)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유가하락, 이동전화기기 및 의류에 대한 소비 감소로 교통(-4.5%), 통신(-8.4%), 의류신발(-5.3%)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임(실질로는 -0.6% 감소).
 - 비소비지출의 경우, 취업자 및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상조세(7.0%), 사회보험(5.0%), 연금(4.4%)에서 증가한 반면 이자율하락과 교체비, 종교기부금 등 지출감소로 이자비용(-9.9%), 가구간 이전지출(-0.3%), 비영리단체 이전(-1.3%)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음.
 - 1/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음.
- 2015년 1/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근로소득은 1분위(11.6%)가 나머지 분위(0.2~4.4%)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가처분소득은 1분위 증가율(6.8%)이 5분위 증가율(3.0%)을 상회함.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4				2015	
	1/4분기		4/4분기		1/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403.3	5.0	4,264.1	2.4	4,517.3	2.6
경상소득	4,207.2	4.4	4,132.0	2.3	4,325.4	2.8
근로소득	2,903.5	5.3	2,869.2	3.3	3,013.8	3.8
사업소득	861.4	3.2	846.8	-3.4	821.6	-4.6
재산소득	20.1	-10.6	21.5	6.5	23.7	17.9
이전소득	422.3	1.8	394.4	7.8	466.4	10.4
비경상소득	196.0	20.9	132.2	8.1	191.9	-2.1
소비지출	2,653.6	4.4	2,506.1	0.9	2,653.4	0.0
비소비지출	840.2	4.8	761.4	0.3	848.8	1.0
처분가능소득	3,563.1	5.1	3,502.8	2.9	3,668.4	3.0
흑자액	909.5	7.3	996.7	8.3	1,015.0	11.6
흑자율	25.5	0.5	28.5	1.4	27.7	2.1
평균 소비성향	74.5	-0.5	71.5	-1.4	72.3	-2.1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2015. 5), 『2015년 1/4분기 가계동향』.

〈표 12〉 2015년 1/4분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금액	증감률(차)
가구원 수	2.47명		3.04명		3.26명		3.46명		3.60명	
가구주 연령	58.7세		50.2세		47.4세		46.1세		47.9세	
소득	1,452.7	7.6	2,895.2	2.5	3,993.7	2.1	5,333.5	2.0	8,907.3	2.4
경상소득	1,353.9	8.5	2,798.0	2.7	3,882.8	2.9	5,181.0	2.1	8,407.5	2.3
근로소득	621.2	11.6	1,708.4	3.4	2,486.3	0.2	3,741.5	4.4	6,508.5	4.3
비경상소득	98.9	-2.8	97.2	-3.7	110.9	-20.5	152.5	-1.2	499.7	3.4
가계지출	1,634.1	5.6	2,536.7	-0.5	3,331.3	-0.8	4,115.4	-0.3	5,891.4	0.1
소비지출	1,347.4	4.5	2,045.3	-0.5	2,631.0	-0.5	3,099.9	-1.3	4,142.0	0.1
비소비지출	286.7	11.0	491.4	-0.7	700.3	-1.9	1,015.5	3.1	1,749.5	0.0
처분가능소득	1,166.0	6.8	2,403.8	3.2	3,293.4	2.9	4,318.0	1.8	7,157.8	3.0
흑자액	-181.4	8.4	358.5	30.5	662.4	19.1	1,218.1	10.7	3,015.9	7.2
흑자율	-15.6	2.6	14.9	3.1	20.1	2.7	28.2	2.3	42.1	1.7
평균 소비성향	115.6	-2.6	85.1	-3.1	79.9	-2.7	71.8	-2.3	57.9	-1.7

자료: 통계청(2015. 5), 『2015년 1/4분기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5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262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343건)보다 81건 낮은 수치임.
- 지난 5월 조정성립률 56.8%
 - 지난 5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4.2%에 비해 2.6% 높아진 수치임.

〈표 13〉 2014년, 2015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5	262	237	108	48	60	82	15	67	14	33	25	56.8
2014. 5	343	298	130	57	73	110	14	96	24	34	45	54.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01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90건)보다 111건 높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3.8%(93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6.2%(182건)를 차지함.

〈표 14〉 2014년, 2015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5	301	275	93	0	25	99	58	0	26
2014. 5	190	178	50	2	55	16	55	0	1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합의 후 갈등

- 공무원연금 합의 문제로 불거진 공무원노조 내부 갈등으로 이충재 노조 위원장이 사퇴와 함께 민주노총 탈퇴의사를 밝힘.
 -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희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힘.
 -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법외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법노조로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국민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정부정책 수립에 당당하게 개입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노인빈곤을 해소,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정책 제도개선 투쟁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문제로 불거진 내부 갈등이 분열로 이어지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지부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함.
 - 투표 당일 정보훈 위원장 직무대행과 본부 활동가들이 출근길 노조탈퇴 반대 선전전을 벌였지만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 지난달 15일 공무원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전체 조합원 3천 494명 가운데 3천 84명(88.3%)이 투표에 참여, 2천 716명(투표인원 대비 88.1%)이 공무원노조 탈퇴를 찬성함.
 - 지부 관계자는 “법외노조로는 조합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투표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함.
 -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창원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투표에도 소극적이었고 해직자도 없어 법내노조 전환을 줄곧 요구해 왔던 지역”이라며 “민주노조의 생명인 단결정신을 버리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 지부의 결정이 노조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함.
- 이후, 이충재 전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에 통합공무원노조라는 명칭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함.
 - 통합공무원노조에는 공무원노조 경기·부산·전남·서울 지역 일부 세력이 동참하고 있으며, 새로운 노조 설립이 준비되면서 공무원노조 안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
 - 통합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를 지향하는 것 또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법내노조를 지향한다는 것은 해직자를 버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임.
 -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개별 탈퇴 후 가입방식으로 조합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내렸음.
 - 서울고등법원이 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해직교사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위헌 법률심판사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수 있는 만큼 현직교원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밝힘.

- 헌법재판소는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핵심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9조2항(“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불허한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곧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담긴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과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림.
 -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미로 보여짐.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추가설명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더라도)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범상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교원노조에는 일시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합법노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이에 전교조와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외노조 판단기준을 두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

-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법원 1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일 밝힘.
 - 따라서 서울고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는 곧바로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추진

- 영국 최대 유통기업 테스코가 자회사인 한국 홈플러스를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홈플러스노조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과 매장별 분할매각을 반대하고 있음.
 -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된 후 한국에 진출한 영국 테스코는 99년 삼성물산과 합작해 홈플러스를 설립했고, 합작계약이 만료된 2011년 이후에는 테스코가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지난해 영국 테스코가 분식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은 뒤 해외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개선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법인인 홈플러스 매각 여부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슈였음.
 - 홈플러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KKR·칼라일·MBK파트너스 등 국내외 사모펀드가 유력한 인수주체로 거론되고 있다”며 “홈플러스의 공중분해를 의미하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과 매장별 분할매각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힘.
- 매각대금 규모가 최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머드급 유통 대기업의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 매장(기업형 슈퍼마켓)이 함께 매각될지, 나뉘어 매각될지가 관심사임.
 - 각 업체의 경쟁적인 점포 확대로 국내 유통업체가 포화상태에 이른 점이나, 대형마트 사업이 사양화로 접어들었다는 업계 자체평가를 감안하면 국내 유통업체가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재무적 투자자로 불리는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홈플러스의 유력한 인수주체로 거론되고 있고, 유통사업 자체보다는 수익성에 관심이 큰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재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함.
 -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매각 문제에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임직원과 2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고용이 달려 있다”며 “국내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본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할매각이나 투기자본 매각이 추진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 노조의 방침이라고 밝힘.

◆ 최저임금, 노동계의 경영계 힘겨루기

-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현행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 더해 ‘가구 생계비 병행조사’ 결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재기되며, 생계비 기초자료를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만을 고려한 기존 방식은 2~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 노동자 생활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생계비 기초자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계는 내년부터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기준과 함께 가구 생계비를 병행조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이에 공익위원들은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기초자료 구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통계는 변화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또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4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로 중위임금(임금노동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노동자의 임금)이 소득 분배 악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기존 중위임금 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과 월급 209만 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올해와 같은 5천 580원으로 동결하지는 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함.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올해 대비 각각 79.2%, 0%로 제시함.
 - 노동자위원측은 “내수진작과 소득분배개선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며 인상안 제출 배경을 설명함.
 - 반면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고, 저임금 단신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며 동결안을 제출함.

◆ **고용노동부, 종파업 투표 참여노조 “법 준수하라”**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노조에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와 쟁의행위(파업)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함.
-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17일 지역의 한 사업장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귀 노조도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가 정당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함.

- 지청 관계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는 행위처럼 불법이나 위법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노조 한 곳에만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함.
- 이에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총파업 찬반투표 목적과 절차를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총파업 찬반투표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힘.
-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절차 완화 등 노동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기에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함.

◆ 민주노총, “메르스 감염자 발생시 작업중지”

- 민주노총은 지난달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면 관련부서 작업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메르스 예방지침을 전국 가맹 사업장에 내려보냄.
 -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감염자 발생시 관련부서 작업 중지, △예방대책 노사 공동수립,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 종사자 대상 예방대책 수립, △치료 대상자와 격리대상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와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주문함.
 - 또한, 민주노총은 △메르스 발생지역 출장·과건 노동자 복귀시 검진과 사후관리, △전 직원 검진과 예방교육 실시, △사업장 내 위생 강화 △다중 이용시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 등을 요구함.
 - 정부에는 집단적 노동이 이뤄지고 대중 접촉이 빈번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KL]**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